성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화숙 의원외 3명

2. 개정이유

○ 「지방자치법」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대상·기준 등에 관하여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, 조문 및 용어 등을 현실에 맞도록 본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성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2조, 제3조)

나. 성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 및 사무에 관한 사항(안 제5조, 제6조)

다.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시방법, 증인의 선서, 증인의 보호, 주의의무, 결과보고 등에 관한 사항(안 제9조~제16조)

라.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따른 과태료, 고발, 징계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17조～제19조)

4. 관련법률

○ 「지방자치법」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, 제52조

5. 검토의견

○ 발의자, 개정이유, 주요내용,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.

○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대상·기준 등에 관하여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,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각종 용어 및 조항을 재 정비코자 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에 합당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○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